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44
----------	-----

2019년 6월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5월 21일, 정진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6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진술 의원)

가. 제안이유

- 특별시도의 차도 노면표시 관리와 포장관리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로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지보수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면표시 관리 업무는 도시교통실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하고, 안전총괄실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업무를 명문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1) 안전총괄실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에 “서울특별시의 노면표

시”를, 도로사업소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중 차도관리에
“버스전용차로”를 각각 추가함(별표 1).

3.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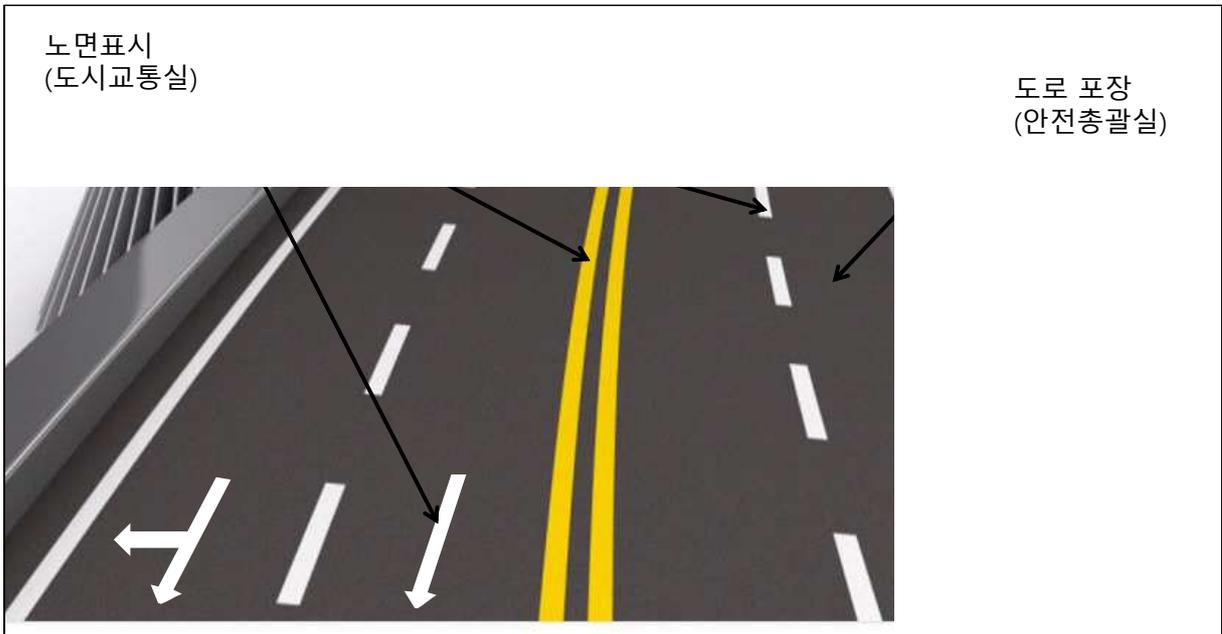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특별시도의 차도 노면표시 및 포장 관리가 도시교통시설과 안전총괄실로 이원화되어있는 것을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로 이관하여 일원화시키는 한편, 안전총괄실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업무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별표 1])

구분	주요내용		관리자
	현행	개정안	
도로 및 도로시설물 - 서울특별시도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안전표지	○자전거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자전거전용도로의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	안전총괄실장

- 현행 서울시 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체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차도,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의 도로안전시설은 안전총괄실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이중 1종 시설물인 교량 및 고가차도 등을 제외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부속물,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등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또한, 도로 중 보도, 도로부속물 중 교통관리시설 및 교통안전시설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은 도시교통실에서 총괄하면서 사업시행은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자치구 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림] 현행 서울시 도로 및 교통시설 관리체계

- 본 개정안의 골자인 현행 시도 노면표시의 경우,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에서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도로사업소가 이를 재배정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한편, 이와 별개로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에서도 노후포장 정비차원에서 도색 복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시도 노면표시 유지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임.
- 한편, 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도시교통실이 신설하고 이후 차도관리를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이 노후포장 정비예산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별표 1에 관리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버스전용차로 차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별표 1의 ‘교통안전시설 중 신호기·안전표지’란에 안전총괄실장의 업무로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를 추가하여 향후 노면표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도시교통실이 아닌 안전총괄실이 직접 편성하고 집행토록 개선하는 한편,
- 별표 1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란에 서울특별시도 중 도로사업소장이 맡고 있는 차도관리 대상에 ‘버스전용차로’를 명문화함으로써, 신설은 도시교통실이 유지관리는 안전총괄실(도로사업소)이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5.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44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제리, 이동현, 이병도, 김재형,
송아량, 봉양순, 강동길, 이정인,
박기재 의원 (9명)

1. 제안이유

- 특별시도의 차도 노면표시 관리와 포장관리가 도시교통실과 안전총괄실로 이원화된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지보수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면표시 관리 업무는 도시교통실에서 안전총괄실로 이관하고, 안전총괄실에서 기 수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업무를 명문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안전총괄실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에 “서울특별시의 노면표시”를, 도로사업소장의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중 차도관리에 “버스전용차로”를 각각 추가함(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안전총괄실장
		○ 차도관리(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자치구청장
	자동차 전용도로	○ 보도관리(촉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자치구청장
○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안전총괄실장	
도로 부 속 물	공동구	○ 공동구	안전총괄실장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	○ 서울특별시도(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생태통로 포함)	자치구청장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도로사업소장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 리대·과속방지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자치구청장
		○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안전총괄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교통 관 리 시 설	지능형 교통체계	○ 교통정보의 수집, 제어, 가공,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	도시교통실장
	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중앙 및 가로변) 유·무인 단속시스템	도시교통실장
	도로표지	○ 문안검토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		자치구청장	
교통 안 전 시 설	신호기·안전표지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지	안전총괄실장
	신호기·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도로사업소장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자치구청장
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	시선유도표지·시선 유도봉·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차량 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 교통섬 등	○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	도시교통실장
		○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안전총괄실장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교통 섬 제외,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 교통섬	자치구청장
하 천 시 설	한강	○ 한강의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육)갑문의 구조물,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육)갑문의 문짝, 권양기 시설물, 통로청소, 수문개폐	한강사업본부장 자치구청장
	국가 및 지방 하천(한강 제외) · 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	○ 제방, 호안, 수제, 보, 관측시설 등 ○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의 구조물,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 호안블록, 옹벽, 도수로,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 수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 등 관련 시설 ○ 갑문의 구조물·문짝·권양기·통로청소·수문개폐 등 ○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진출로 시설 ○ 그 밖의 하천시설	자치구청장
하 수 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복개 구조물	하천복개구조물	○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	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
		○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	주 기능별 설치사용자
<p>비 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청계천 제외지(堤外地)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開口部) 수문 : 물순환안전국</p> <p>나. 청계천로(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 안전총괄실장</p> <p>다.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p> <p>라. <삭 제></p> <p>참고1) "차도"란 보·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p> <p>참고2) 도로부속물의 "절개지"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별표 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제5조 관련)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구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도로 (차도·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생략)		도로 (차도·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특별시도	(현행과 같음)	
		○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도로사업소장			○ ----(버스전용차로, ----)	
	○ 도로시설물(한강교량, 1층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제외)		○ ----				
	자동차전용도로	(생략)			자동차전용도로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교통안전시설	신호기·안전표지	(생략)		교통안전시설	신호기·안전표지	(현행과 같음)	
		○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	안전총괄실장			○ ----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